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령의 제정·개정”을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입법계획”을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안의 입법계획”을 “「행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3항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이하 “정부입법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해당 연도에 정부에서 추진할 정부입법계획”을 “정부입법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수정 요청에 따라”를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정부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정 요청을 받은 정부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중복·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제6항 전단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요청할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청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통계청장”으로,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를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5.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제11조의4를 제11조의5로 하고,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4(사전검토제도)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정당 또는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국회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제11조의4”를 “제11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4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11조의4제1항”을 “제11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법제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현행 법령에 대한 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제처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정비 대상 법령을 일괄하여 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령의 일괄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의2 제목 중 “하위법령”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령 중 하위법령”을 “법령”으로, “하위법령 정비계획”을 “법령 정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위법령”을 각각 “법령”으로 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훈령·예규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쉬운 용어나 문장 등을 사용하여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또는 훈령·예규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 또는 훈령·예규등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문장 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하여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또는 훈령·예규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훈령·예규등을 알기 쉽도록 제정·개정하거나 검토·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대상·기준·방법·개선안 등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중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의뢰할 수”를 “의뢰하거나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 해석 의견을 첨부하여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4호 중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행정심판 또는 소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법령해석기관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때에 그 사실을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제10항 중 “제8항 및 제9항”을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및 제9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질의를 받는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27조의3제5항제3호 중 “제26조제7항·제8항 및 제9항”을 “제26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29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과 관련하여 법제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제지원을 해야 한다.

1. 소관 법령의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를 지방자치단체가 제때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자치법규 입안에 관하여

통보하려는 지침에 대한 자문 등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에 관하여 조언·권고·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에 관한 자문 등

제29조의4를 제29조의5로 하고,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① 자치입법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협의회는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을 조정·협의한다.

③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제처차장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 소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실장·국장·본부장급 공무원

나. 시·군·자치구: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④ 조정협의회의 의장은 법제처차장으로 한다.

⑤ 조정협회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거나 정부의견 통일이 필요하다고 협의회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조정·협회의 대상이 되는 안건의 조정·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 소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4조,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u>법령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u>행정기본법</u>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법령의 제정 · 개정 ----- ----- ----- ----- ----- -----.
제4조(<u>입법계획의 총괄 · 조정</u>) 법제처장은 <u>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안의 입법계획을 총괄 · 조정</u> 한다.	제4조(<u>정부입법계획의 총괄 · 조정</u>) ----- 「 <u>행정기본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3항에 따른 <u>정부입법계획(이하 “정부입법계획”이라 한다)</u> -----.
제8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종합하여 <u>해당 연도에 정부에서 추진할 정부입법계획을 수립</u> 하되, 정부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제8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정부입법계획</u> ----- ----- ----- -----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중복·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생략)

제9조(정부입법계획의 시행·수정) ①·② (생략)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수정 요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내용 중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거나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법률안의 입법 추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협조) ① ~ ⑤ (생략)

⑥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정부입법계획의 시행·수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
여 -----

----- .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정부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
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정 요청을 받은 정부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중복·상충
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협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청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하는 평가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통계청장--

-----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신 설>	<u>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u>」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신 설>	3. 「<u>성별영향평가법</u>」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신 설>	4. 「<u>지방자치법 시행령</u>」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신 설>	5. 「<u>통계법</u>」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신 설>	<u>제11조의4(사전검토제도) ①</u>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정당 또는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u>국회법</u>」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u>②</u>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한다.
<u>제11조의4</u> (생략) 제12조의2(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① <u>제11조의4</u>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	<u>제11조의5</u> (현행 제11조의4와 같음) 제12조의2(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① <u>제11조의5</u>-----

_____ .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1. -----

-----. 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4에서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1. 제11조의5제1항-----

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예고방법) ① -----

기관의 장은 관보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24조(법제정비의 추진) ① 법제처장은 현행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검토·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

----- 법제정보시스템-----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법제정비의 추진) ① 법제39조제1항에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u>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u> 3의2. <u>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u> 4. <u>그 밖에 현행 법령에 대한 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②·③ (생략) <u><신설></u> ④ ~ ⑥ (생략) 제24조의2(<u>하위법령의 신속한 정비체계 마련 등</u>)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하여야 할 <u>법령 중 하위법령</u>에 대해서는 정비 대상 법령과 그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u>하위법령 정비계획</u>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무조정실 등 제도개선사항	3. <u>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u> 4. <u>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u> 5. <u>그 밖에 현행 법령에 대한 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법제처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정비 대상 법령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령의 일괄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u>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24조의2(<u>법령의 신속한 정비체계 마련 등</u>)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법령</u>----- ----- ----- -- <u>법령 정비계획</u>----- -----. ③ -----
--	--

을 총괄적으로 발굴·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수립한
하위법령 정비계획의 소관별 추
진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관리
하여야 하고, 그 결과 제도개선
사항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각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소관 하위법령의
일괄정비를 요청하는 동시에 법
제처장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법령 -----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의4(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은 법령 또는 훈령·예규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쉬운
용어나 문장 등을 사용하여 국
민이 알기 쉬운 법령 또는 훈령
·예규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
관 법령 또는 훈령·예규등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문장 등
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

	<u>하여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또는 훈령·예규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③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훈령·예규등을 알기 쉽도록 제정·개정하거나 검토·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대상·기준·방법·개선안 등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u>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u>법령 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u>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말하고,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① ----- ----- ----- ----- ----- ----- ----- ----- <u>법 제</u> <u>40조제3항에 따른 법령해석업</u> <u>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u>----- ----- ----- ----- ----- -----

를 말한다. 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⑦ 민원인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으면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민원인의 법령 질의사항을 포함한다)에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의뢰하거나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의견을 첨부하여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
청할 수 -----.
-----.

⑧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5. ~ 11. (생략)

⑨ 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한 민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의견을 첨부하여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해석기관은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때에 그 사실을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받은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

-----.

1. ~ 3. (현행과 같음)

4. 행정심판 또는 소송-----

--

5. ~ 11. (현행과 같음)

⑨ 법령해석기관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때에 그 사실을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령해석 요청 의뢰가 제8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법령 소관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법령해석을 요청

하지 아니한다고 민원인에게

통지한 경우

⑩ 제1항, 제4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법령해석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해석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⑪ 법령해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한다. 다만, 제9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법령해석기관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해석 요청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⑩ ----- 제7항 및 제8항-----

-----.

⑪ -----

--. <단서 삭제>

1. -----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2. 3. (생략)

② (생략)

④ (생략)

1. · 2. (생략)

3. 제26조제7항 ·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민원인의 해석 요

제26조의2(훈령·예규등에 대한 해석의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제27조의3(위원회 운영) ① ~

⑤

3. 제26조제7항 및 제8항-----

청 의뢰를 받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법제처에 요청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요청
한 법령해석 사안에 대하여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당초 회신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⑥·⑦ (생략)

제29조의3(자치입법 지원) ① ~

③ (생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를
지방자치단체가 제때 마련하도
록 하기 위하여 그 자치법규 입
안에 관한 지침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제처장에게 해
당 지침에 대한 자문 등 법제지
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법령의 입법취지 등
을 고려하여 법제지원을 해야
한다.

⑥·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자치입법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
치단체의 자치입법과 관련하여
법제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
장은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고
려하여 법제지원을 해야 한다.

1. 소관 법령의 시행을 위한 자
치법규를 지방자치단체가 제
때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자치
법규 입안에 관하여 통보하려
는 지침에 대한 자문 등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또
는 자치입법안에 관하여 조언

⑤ · ⑥ (생략)

<신설>

· 권고 ·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에 관한 자문 등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의4(중앙 · 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① 자치입법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협의 · 조정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중앙 · 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협의회는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을 조정 · 협의한다.

③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제처차장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
소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
원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른 공무원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시·도·특별자치도: 실
장·국장·본부장급 공무
원

나. 시·군·자치구: 부시장
· 부군수·부구청장

④ 조정협회의회의 의장은 법제처
차장으로 한다.

⑤ 조정협회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
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
하는 경우

2.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을 해
소하거나 정부의견 통일이 필
요하다고 협의회회의 의장이 인
정하는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대상이 되는 안건의 조정·협의

<u>제29조의4</u> (생략)	<u>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u> <u>관계 중앙행정기관, 자치입법</u> <u>또는 자치입법안 소관 지방자치</u> <u>단체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u> <u>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u> <u>수 있다.</u> <u>제29조의5</u> (현행 제29조의4와 같음)
---------------------------	---